

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전병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6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5일

발 의 자: 전병주, 강동길, 김 경,
김영철, 박강산, 박수빈,
박승진, 박철성, 서준오,
송도호, 오금란, 왕정순,
이상욱, 이상훈, 이소라,
이영실, 이용균, 임만균,
임종국, 최기찬, 최재란,
한 신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서울시의회 전반에 청렴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
- 이에 서울시의회의 의원과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의회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(안 제1조~제2조).
- 나.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해 규정함(안 제3조~제4조).
- 다.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활성화 사업, 청렴도 평가, 청렴도 조사,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~제9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, 지방공무원법 , 개인정보 보호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시의회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직자”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의회의원
2.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

제3조(의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의회 의장(이하 ‘의장’이라 한다)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직자의 청렴의무)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서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

2.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
 3.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
 4.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
 5.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·시행과 관련하여 시민, 민간전문가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제6조(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)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교육 및 홍보사업
2. 공직자 청렴도 평가·조사
3. 청렴문화 체험·실천 관련 사업
4.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·조사 사업
5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제6조의2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) ① 의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함에 있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하며, 성명, 소속,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·이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청렴도 평가) ① 의장은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청렴도 평가(이하 "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청렴도 조사) ① 의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청렴교육 및 홍보 등)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, 청렴 서포터즈 활동, 반부패·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표창 등)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부서, 공직자에 대해 「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협력체계)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기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다만, 안 제10조(표창 등)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 관련 서울시 유사 사업¹⁾을 참고자료로 제시함

[참고] 2024년도 서울시의회 청렴관련 예산 현황

사업명	예산액
윤리의식 향상 및 청렴도 평가 대비	= 37,500천원 ○ 윤리심사,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운영 심사수당 9,000,000원 = 9,000천원 ○ 자체 청렴체감도 측정 설문조사 용역 8,500,000원 = 8,500천원 ○ 청렴정책 홍보 및 홍보물 제작 5,000,000원*2회 = 10,000천원 ○ 윤리심사,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합동 워크숍 5,000,000원 = 5,000천원 ○ 윤리심사,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합동 발표회 5,000,000원 = 5,000천원

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추계분석관 이홍래
☎ 02-2180-7952
e-mail : hongl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2024년 서울시 「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금」 유사사업을 참고자료로 제시함
- 사업명 :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중 청렴활동 직원참여 포상 현황
- 예산현황 : 2,400천원
- 산출방법 : 20,000원*10명*12월 = 2,400천원 * 출처 : 2024년도 서울시 예산서